

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8월 17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

나. 제안이유

-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 명칭이 ‘맑은누리파크’로 변경됨에 따라 「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명칭 변경
-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경북북부권 ‘11’ 개 시·군을 ‘10’ 개 시·군으로 변경

다. 주요내용

-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 을 ‘맑은누리파크’ 로 변경 (안 제1조,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)
-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경상북도와 경북북부권 ‘11’ 개 시·군의 실시협약으로 정한 금액에서 경상북도와 경북북부권 ‘10’ 개 시·군의 실시협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변경(안 제4조제1항제2호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성태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 의 명칭이 공모를 통해 ‘맑은누리파크’ 로 공식 사용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에서 명시한 명칭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, 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4조제1항에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 을 ‘맑은누리파크’ 로 개정하고, 군위군의 관할구역 제외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‘11개’ 시·군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‘10개’ 시·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이 밖에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명칭 개정에 따른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와 반입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,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인 「경상북도

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서 명시한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의 명칭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개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‘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’의 명칭을 ‘맑은누리파크’로 공식 사용함에 따라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여 명칭의 사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